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

[시행 2025. 12. 31.] [조례 제2073호, 2025. 12. 31., 일부개정]

경상북도 구미시(수도과), 054-480-4452



제29조(요금)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 .<개정 2025.12.31.>

②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1조(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6.3.23, 2019.12.30, 2020.5.13, 2023.1.30., 2025.12.31.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, 소년소녀 가장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 자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수혜 대상자
3. 삭제<2015.1.9>
4. 천재지변(개정 2007.01.11)
5. 좋은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(개정 2008.05.13)
6.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
7. 삭제<2007.01.11>
8.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(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)
9.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10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
11. 전자 고지를 신청한 자
12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감경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<개정 2020.8.11., 2025.12.31.>

1. 별표 3에 따른 가정용
2. 별표 3에 따른 일반용
3. 별표 3에 따른 욕탕용
4. 별표 3에 따른 전용공업용